

교차로 사고의 보상처리

이 기 무

(동부화재(주) 보상전략팀장)

1. 머리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이면서도 가·피해자간에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려워 사고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이다. 이는 교차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차량들이 한 곳으로 모여드는 장소로 교통량이 일반도로에 비해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진행방향이 서로 달라 사고발생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 경위도 차 대 차가 충돌하므로써 어느 일방의 전적인 과실이 아닌 양 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는 것도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교차로 사고의 보상처리에 대하여 알아본다.

2. 교차로의 정의와 통행방법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차로라 함은 십(十)자로, 정(丁)자로 그밖에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 그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러한 교차로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각종 신호기 및 노면표시를 해놓고 있으며, 교차로에서의 좌·우회전방법, 통행우선순위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교차로에서의 우회전방법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

고자 할 때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30미터 앞에서 진행차선을 결정하여야 하며, 도로의 오른쪽에 붙여 서행하며 신호등을 켜고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교차로에서의 좌회전방법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진행하고, 2대의 차량이 함께 좌회전할 때에는 교차로내 각각의 가상 지정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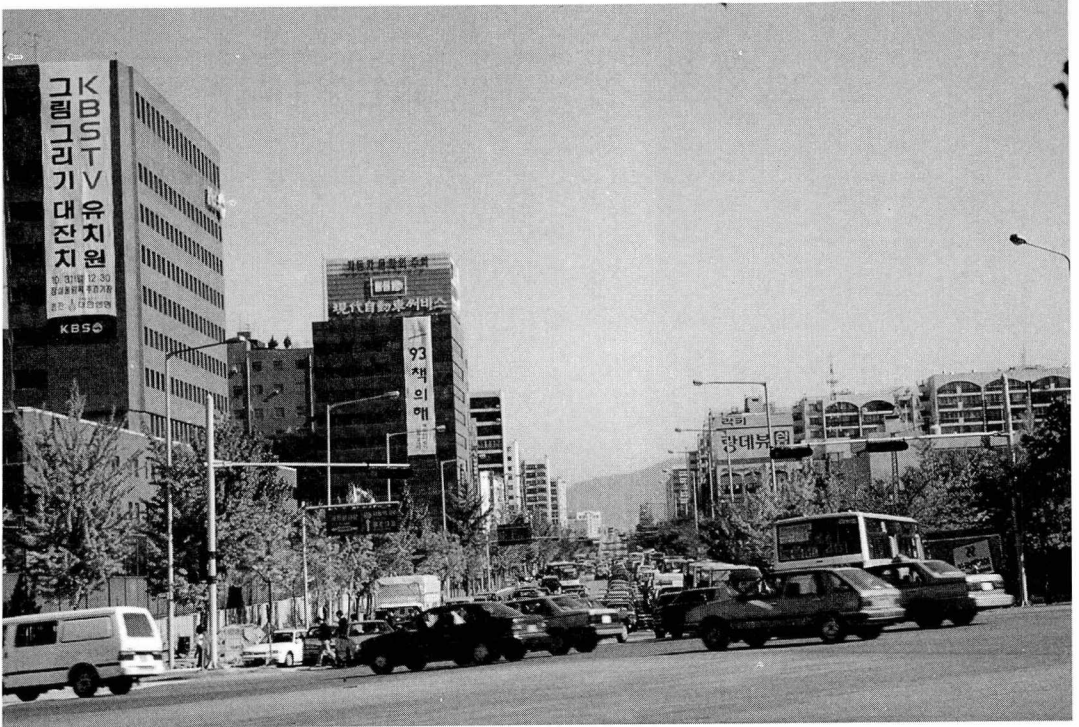
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통행우선순위

모든 차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교차로 정지선상에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며 전·좌·우측방을 예의주시하여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다음의 통행우선순위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첫째, 선진입한 차량이 최우선이다.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모든 차량은 이미 다른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둘째,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차마 순으로 통행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세제, 폭이 넓은 도로의 차량이 우선이다.

폭이 좁은 도로로부터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하려고 할 때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네째, 우선순위와 도로폭이 같은 경우라면 우측 도로의 차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그외에 대형차와 소형차가 마주친 경우에는 소형차가 우선하며 직진차가 좌회전차보다 우선하고, 우회전차가 좌회전차보다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도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면 교차로 사고 상황별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사례를 살펴본다.

3. 교차로 사고상황별 처리사례

가. 신호없이 우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버스운전사가 편도 1차로의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거울을 통하여 뒤따라 오

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도 없이 우회전하다가, 이 버스의 오른쪽 뒤를 따라오던 오토바이로 하여금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면 사고책임이 버스에게 있다고 결정하였다.

나. 교차로 좌회전시 중앙선 일부 침범사고

좌회전을 하던중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접촉한 경우에 대하여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는 경우는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말하므로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을 건너 지르다가 발생한 것은 교차로통행방법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교차로 진행신호시 유턴한 차량의 사고

교차로에서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교차로에 녹·황·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이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은 녹색등화의 경우에는 직진과 우회전할 수 있고, 황색등화 및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우회전할 수 있으며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고 녹색화살 표시의 등화인 경우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라. 선진입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의 사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끝마칠 상태에 있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아직 위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지도 아니한 반대차선의 직진차량을 위하여 좌회전도중이라도 일단 정차하여 동차량의 우선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는 교차로 안에서 좌회전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교차로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경우까지 예상하고 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마. 도로폭과 선진입여부가 경합된 사고

노폭이 넓은 국도와 노폭이 좁은 도로가 연결된 지점에서는 노폭이 넓은 국도쪽에 우선통행권이 있다 할 것이나, 그 국도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한 후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점멸등까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마땅히 전방에서 위 국도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할 것인 바, 노폭이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여 그 부근에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시계(視界)에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한 연후에 좌회전하면서 진입한 경우에는 우선통행권은 오히려 선진입한 차량에게 있다.

4. 교차로 사고의 보상처리

사고가 발생하면 의당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게 마련이지만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그 특성상 잘잘못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곳이라면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호기가 없고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차량의 통행형태, 도로조건, 차량의 속도, 차종 등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그 다양한 형태만큼 잘잘못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다시말하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어느 일방이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즉, 각 차량의 잘못된 정도를 정하여 그 비율만큼 서로의 손해를 물어주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차로에 진입할 때 속도를 줄였느냐 하는 점이다. 이 기준은 단순히 교차로 진입전 보다 속도를 줄였다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명확하게 감속한 것을 말하며 감속하지 않은 차량에게 통상적으로 60~70%의 책임을 묻게 되고 여기에 위에서 말한 통행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그 비율을 가감하게 된다. 물론 이와같은 사항을 고려하여도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똑같이 잘못된 것으로 처리한다.

교차로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취약지점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교차로를 통행할 때에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한 후,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우선통행순위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㉞